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12월말 결산법인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마감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영리법인인건 비영리법인인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부가되어 과세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②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③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월, ④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각각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집단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0.9%~2.4%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수비용과 건축물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내의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사업장별 안분 계산 산식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left[ \frac{\text{해당시·군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해당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times \frac{\text{관할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할 때,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의 수로 하며, 이때의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또한 안분 계산시의 건축물 연면적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연면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